

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8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은 미래 신산업 분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허리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
- 나.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 :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
- 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 - 1) 추진근거
 - 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 - 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 - 다) 「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18조
 - 라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 - 2) 필요성 : 기업 발굴, 선정, 사업관리, 컨설팅, 상담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·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,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

다. 위탁 사무 내용 :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 업무 전반

- 1)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위원회 구성·평가, 허리기업 선정
- 2) 기업 간담회 실시, 허리기업별 전담PM 매칭, 과제 추진현황 점검
- 3) 사업 추진결과 검토, 지원기업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확산 지원 연계

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 등) : 해당없음

마. 위탁기간 : 2027. 2.~12.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80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사업비	간접비	인건비	비고
800	560	80	160	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'26.8.18.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3. 부서의견

- 기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다) 「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18조

라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2027년도 예산편성 예정

다.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※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

라. 성과보고서 및 성과평가 결과, 감사결과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제4조(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·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책임행정의 보장성

제6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~6. 생략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기존의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
2. 기존의 위탁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% 이상 증감하는 경우

□ 「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지원사업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,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, 보조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보육(단, 구체적 사항은 「구미시 중소기업 창업 지원 조례」에 따른다)
2. 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사업
3. 이차보전, 특례보증, 보증료 보전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

4. 기술혁신 및 기술보호
5.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
6. 스마트공장 전환 및 ESG 경영 지원
7. 교육·인력양성 및 컨설팅
8. 지역특화산업 육성
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생략

제18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6조 (업무의 위탁) ①시장은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지원사업 위탁 시 사업
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

2. 비용추계의 전제 (구미시 기업지원사업 운영 요령에 따름)

가. 사업비는 연간 사업량 및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함

나. 인건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의 인원 및 인건비 단가를
적용하여 산정함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세출	○ 사업비	560	560	560	560	560	2,800
	○ 간접비	80	80	80	80	80	400
	○ 인건비	160	160	160	160	160	800
	계	800	800	800	800	800	4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국 비							
도 비							
시 비		800	800	800	800	800	4,000
민 간							
기 타							
합 계		800	800	800	800	800	4,000

5. 부대의견 : 위탁금의 상세내역은 사업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

6. 작성자 :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박지나(480-613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구 분	금액(천원)	산 출 근 거
합 계	800,000	
사 업 비	560,000	· 기업성장지원비 465,000천 원 - 신규 60,000천 원×4개사=240,000천 원 - 연속 37,500천 원×6개사=225,000천 원 · 허리기업 성장컨설팅 지원비 2,923천 원×22개사≒64,300천 원 · 전문가활용비 1,500천 원×3회=4,500천 원 · 회계감사비 5,000천 원×1회=5,000천 원 · 여비 20천 원×50회=1,000천 원 · 사무용품비 300천 원×4회=1,200천 원 · 회의비 300천 원×10회=3,000천 원 · 연구수당 16,000천 원
간 접 비	80,000	·기관 공통경비 80,000천 원
인 건 비	160,000	· 참여직원 인건비 160,000천 원 - 참여인력(수석급) 1명×11개월×30% 참여율 33,676천 원 - 참여인력(책임급) 2명×11개월×27% 참여율 45,979천 원 - 참여인력(선임급) 3명×11개월×40% 참여율 75,081천 원 - 참여인력(원 급) 1명×11개월×15% 참여율 5,264천 원

성과보고서

1. 사업기간 : 2026. 2.~12.

2. 사업비 : 800백만원

3. 사업내용

- 허리기업(매출액 50억~500억 미만) 대상 맞춤형 성장패키지 지원

4. 추진실적(2026년)

- 사업대상기업 선정 : 신규 6개사, 연속 5개사, 졸업 7개사
- 맞춤형 성장패키지 지원 : 490백만원(신규 300, 연속 190)
 - 전략수립, 기술혁신, 시장확대, 역량강화

성과평가 결과서

1. 평가개요

- 평가기간 : 2026. 8. 6.(목)
- 대 상 :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
- 수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대상기간 : 2026. 2. 1. ~ 평가일 현재
- 평가내용 :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 업무 전반
- 평 가 자 : 2명(기업지원팀장 및 담당자)
- 평가방법 : 평가표에 따른 부서 자체평가
- 평가항목 : 2개 분야 7개 항목

2. 평가결과 및 총평

- 평가결과

총점 (100)	공통분야(40)				개별분야(60)		
	사업계획 (10)	인력관리 (10)	예산관리 (10)	성과관리 (10)	대상자관리 (20)	사업홍보 (20)	성과 및 만족도 제고 (20)
93	10	10	10	9	20	16	18

- 총 평

-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다년간의 기업지원사업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정보와 지원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, 구체적으로 수립된 사업계획과 사업매뉴얼을 기반으로 기업별 전담PM을 매칭하는 등 체계적인 밀착형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 있어 선정기업의 만족도가 높음
- 전년도 정산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사업매뉴얼에 반영한 점은 예산 효율성과 사업관리의 지속적인 개선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
공공위탁사무 자체감사 결과

○ 위탁사무 개요

위탁기관 (부서)	위탁사업명	수탁기관명	위탁예산 (백만원)	위탁기간	비고
기업지원과	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+1 지원사업	(재)구미전자 정보기술원	800	2026. 2.~12.	

○ 감사개요

- 기 간 : 2026. 8. 6.(목)
- 감사범위 : 위탁업무 전반
- 감 사 반 : 2명(기업지원팀장, 담당자)

○ 감사방법 : 실지감사

○ 감사결과 및 처분사항 : 적정

○ 기타사항 : 관련 법령 및 협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

소 관 부 서		기업지원과
입 안 자	과 장	권 미 영
	팀 장	공 민 정
	담 당 자	박 지 나 (480-6132)